

정 관

(2014년 3월 24일 개정본)

사단법인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Korean Singer-songwriters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Korea Singer-songwriters Association', (이하 "본 협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음악인들의 인재발굴과 글로벌마케팅을 지향하는 작품 개발, 관련정보와 자료의 축적, 간행물 발간, 건전한 이벤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싱어송라이터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싱어송라이터의 관리, 조사, 연구, 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
3. 싱어송라이터의 해외진출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뮤직아카데미의 설립과 교육 자료의 개발
5. 연구 자료집 발간 및 간행물 출판사업
6. 창작 발표회 공연 및 강좌 개최
7. 음반제작 및 공연 등 회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연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제공)

1.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전부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화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 또는 단체로 구분한다.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 작곡, 작사, 노래로 LP, CD, 싱글앨범, 디지털 싱글 등 음원을 발표한자로서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단,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은 정회원으로 승인 할 수 있다.
2. 후원회원 :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가 회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의 의무

제10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 외 제8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세미나, 강연, 콘서트 등 협회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단체)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12조 제1항, 2항, 3항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정권),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단체)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2. 이사(회장 포함) 5인 이상 30인 이내
3. 감사 2인

제15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 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 감사는 감독기관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본 협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 까지 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본 협회의 활동에 현저하게 장애를 초래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임원의 선임제한)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 (회장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고문 및 자문위원, 연구위원)

본 협회는 자문 및 연구기구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2조 (구성)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본 협회의 소속 회원과 임원으로 한다.
2.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의 3분의 2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 또는 기타 통신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의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5항의 근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한다.

제25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과정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3.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본 협회의 운영상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7조 (제척)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회원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문서 또는 기타 통신수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집의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의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5항의 근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한다.

제31조 (서면 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서면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이사회 의결권은 참석이사를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단 문서로 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실행기구

제34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회장, 각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과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협회의 주요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선임은 이사가 회장에게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아닌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 (실행기구의 확대 및 축소)

본 협회의 회장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사안별로 각종 기구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36조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직속기구이며 본 협회가 필요로 하는 국내외의 음악분야 활동 관한 제반 업무를 분장한다.
2. 본 협회는 효과적인 작품과 공연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은 이사가 회장에게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분과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회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해당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을 정회원 중에서 회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아닌 자도 분과 위원으로 영입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사무국)

1. 사무국장(또는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은 총무, 홍보, 조직, 교육, 조사부로 구성한다.
2. 사무국장(또는 사무총장)의 임명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특별위원회 및 기구)

1. 본 협회의 사업 중,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3.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기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아닌 자도 특별위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 (자문위원회)

1. 본 협회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 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0조 (후원회)

1. 본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을 위촉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본 협회에 약정한 후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장 재정

제41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당해 사업 년도의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각종보조금으로 한다.

제42조 (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3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도별 결산은 결산 시에 업무현황, 재산 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총회 승인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보칙

제44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추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운영세칙 등)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47조 (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